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량(제23조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액상제품	600g(ml)	1. 수거량은 검사대상물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사대상물)는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물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대상물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정제 · 캡셀 · 분말 · 과립 · 환제품	200g(ml)	2.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ml)	3.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원료 또는 성분 · 자연산물 · 성분	1kg 500g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